

5.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중 개정

건설교통부공고 제1998-209호 1998. 7. 3

주요내용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별표1의 감리원수”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수”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출장여비 :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를 계상하되 출장실적에 따라 정산할 수 있음.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감리대가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된 감리용역의 경우는 잔여 감리기간동안 종전의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 건설공사 감리원수

(단위 : 인·월)

공사비 (억원)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50	30	33	36
70	38	42	47
100	50	56	61
150	69	76	84
200	86	95	105
300	117	130	143
400	146	162	179
500	173	193	212
700	225	250	275
1,000	295	328	361
1,500	404	448	493
2,000	504	559	615

1. 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는 직선보간법에 의한 감리원수 적용
2. 2000억원 이상일 때는 다음의 계산식에 의한 감리원수 적용

① 감리원수 = $1.6192 X^{0.769}$

(X : 보통의 공종 공사비)

② 여기서 단순한 공종은 -10%하고 복잡한 공종은 +10%한 감리원수를 적용함

3. 각급 감리원수는 당해 공사의 규모, 중요도, 복잡도,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감리원의 등급별 배치인원수를 발주청과 감리회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text{감리원수} = \sum_{i=0}^5 (N_i \times S_i)$$

N_i : 각급 감리원의 수(인·월)

S_i : 각급 감리원의 환산비

4. 감리원수에서 비상주감리원의 비율은 단순한 공종 10%, 보통의 공종 15%, 복잡한 공종 20%를 원칙으로 하되 당해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적용할 수 있다.

제5호 내지 제8호(현행과 같음)

주택회보